

# 지방소특세

## 특례

2022 핵심실무 지방세

전통흘 · 최선재 공저

부록1

I.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
II.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25
I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34
IV.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44
V.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45
VI.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55
VII.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63
VIII.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71
IX.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88
X.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97
XI.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114
XII.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144

# 지방소득세 특례

2022 핵심실무 지방세 부록



## I.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1. 기장세액공제(지특법 § 93)

#### (1) 공제세액의 산정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소법 §160 ③)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함)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기장세액공제액 :  $\text{Min}[(1), (2)]$

- (1)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times$  [사업소득금액  $\div$  종합소득금액]  $\times$  20%
- (2) 한도 10만원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은 제외한다.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2) 적용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비치 ·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②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화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 · 지변, 화재 · 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3) 신청 및 신청의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화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 3 제3항 참조).

### 사례

#### 기장세액공제와 세액재계산(국심 2005서3772, 2006.6.8.)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장세액공제액을 당초 신고한 31,043원으로 하였으나, 종합소득금액 중 기장 소득금액은 변동없이 근로소득금액(상여)이 증가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었으므로 기장세액공제는 증가하여야 하고, 상여처분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한 31,043원만을 기장세액공제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 3 제1 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재계산함.

또한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 근로소득세액공제(지특법 § 94)

### (1) 공제세액의 산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만원 초과	7만1,500원 + (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2) 적용배제

근로소득세액 공제세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 7만4천원
-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 사례

##### 원천징수불이행과 납세의무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 이어서 이를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83누540, 1984.4.10.; 대법원 2005두5666, 2007.9.7.).

## 3. 배당세액공제(지특법 § 95)

### (1) 공제세액의 산정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소법 §17 ③) 중 의제배당 등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1.1.부터 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배당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10\%$

(1)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 총금액  $\times 11\%$

(2)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2) 공제한도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2,000만 원 초과분 총수입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귀속법인세 포함)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세액상당액을 의미한다.

## (3) 배당세액공제 배제액의 계산

이자 · 배당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순차적으로 다음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분리과세(1.4%) 적용분과 기본세율 적용분을 구분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배당소득에 11%가 적용되는 배당소득(GROSS-UP대상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 사례

배당세액공제와 신청의 적격성(대법원 79누223, 1980.6.10.)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만으로 배당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이 아님.

### 예시

이자소득 : 정기예금이자 3,000,000, 사채이자 10,000,000, 배당소득 : 비상장법인 배당 10,000,000, 집합투자기구 배당 5,000,000인 경우 기준초과금액의 계산

기준초과금액(비상장법인 배당 일부)	8,000,000	기본세율 적용분 (GROSS-UP 적용)
[3순위] GROSS-UP 대상(비상장법인 배당 일부)	2,000,000	1.4% 적용분 (GROSS-UP 적용배제)
[2순위] GROSS-UP 제외대상(집합투자기구 배당)	5,000,000	
[1순위] 정기예금이자, 사채이자	13,000,000	

## 4. 재해손실세액공제(지특법 § 96)

### (1) 공제세액의 산정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해"라 함)로 다음의 자산총액(소령 §118 ①)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자산상실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text{Min } [(1), (2)] \times 10\%$

(1) 공제세액 = 공제대상 소득세액 × 재해상실비율

※공제대상 소득세액 :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사업소득/종합 소득금액

(2) 한도액 = 상실된 재산가액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재해손실세액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지특령 §47 ①, 소령 §118 ①을 준용).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기장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공제한다.

### (2) 신청절차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공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승인을 얻은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하면 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1.」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인 제조업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30%의 자산상실을 입었다. 종합소득금액 2억원, 사업소득금액 1.8억원, 이자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액 3,000만원, 재해발생금액은 3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은?

1. 과세표준 :  $2\text{억원} - 3,000\text{만원} = 1.7\text{억원}$
2. 산출세액 :  $2,000\text{만원} \times 14\% + [1.8\text{억원} - 3,000\text{만원}] \times \text{기본세율} = 280,000 + 37,600,000 = 40,400,000\text{원}$
3.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10\% = 10,908,000 \times 10\% = 1,090,000\text{원}$   
(1) 공제세액 =  $40,400,000\text{원} \times 1.8\text{억원}/2\text{억원}(90\%) \times 30\% = 10,908,000$   
(2) 한도액 : 3,000만원

### 사례

#### 01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 범위(수원지방법원 2003구합4486, 2005.3.16.)

자산상실비율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상실 전 자산 총액(상실 전 사업용 자산의 합계+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을 의미함. 또한 재고자산화재손실금에 관하여 보면 제출한 장부의 기재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고가 추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증빙서류 등이 허위임이 상당부분 입증된 것이므로 보이므로 재고자산화재손실금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는 이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94누3407, 1995.7.14.; 98두1604, 1998.5.26. 등 참조) 중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함.

#### 02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 범위(국심 2001중3257, 2002.2.21.)

1996년분 소득세는 임대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1997.7.9. 이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4.9. 추가경정 고지된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1997년분 소득세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기는 하나 임대사업장의 화재발생에 따른 생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5.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지특법 § 97)

### (1) 세액공제의 산정

#### 가) 종합소득분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때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소법 §57 ① 2호)을 처리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10\%$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소법 §57 ① 1호)으로 처리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나) 양도소득분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 (2)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의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다음 「나」의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가) 요건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거주지국”이라 함)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함)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나) 계산방법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times \text{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text{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3)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외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다시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 사례

#### 01 법인지방소득세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범위(조심 2020지1333, 2021.9.13.)

국가 간의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등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 인세액이 차감된 후의 순액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 비용처리할 금액이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될 금액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에 산입된 효과가 나타나는 점,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

※조심 2020지1899, 2021.8.5.; 조심 2019지3694 2020.7.28.; 조심 2021지0371, 2021.8.9.도 동일한 취지임.

#### 02 법인세 이월공제관련 지방소득세 공제가능성(조심 2020지3769, 2021.1.29.)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한 취지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 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이는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점,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20지3843, 2021.1.28.; 조심 2020지3772, 2021.1.20.; 조심 2021지0964, 2021.4.13.; 조심 2020지3838, 2021.4.13.; 조심 2021지0939, 2021.10.15.; 조심 2021지1290, 2021.10.13.; 조심 2021지0923, 2021.11.4.; 조심 2021지1144, 2021.5.14.)도 동일한 취지임.

#### 03 국별한도제 적용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대법원 85누651, 1987.2.24.)

외국법인세는 외국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 쟁점

### 조약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문제

조약에 의거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타방체약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타방체약국의 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을 포함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1) 2015.12.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 2016. 1.1. 시행) 제3조 제1항의 규정(쟁점조문 ②)에서는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2016.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쟁점조문 ①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조약의 경우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약에 의한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외국납부 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5.12. 선고 85누1000 판결참조) 외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중복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국세로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 받았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는 외국에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을 우리나라 국세인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100%)를 받았다고 하면 외국에 지방세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0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를 얼마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납부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입법취지임을 보면 이중과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협평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의 전체적인 구조들의 범위 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국제조약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이중과세 방지대상 조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방식까지 지방세법상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구갑부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규정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 사례

### 0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타당성(대법원 2018두50000, 2018.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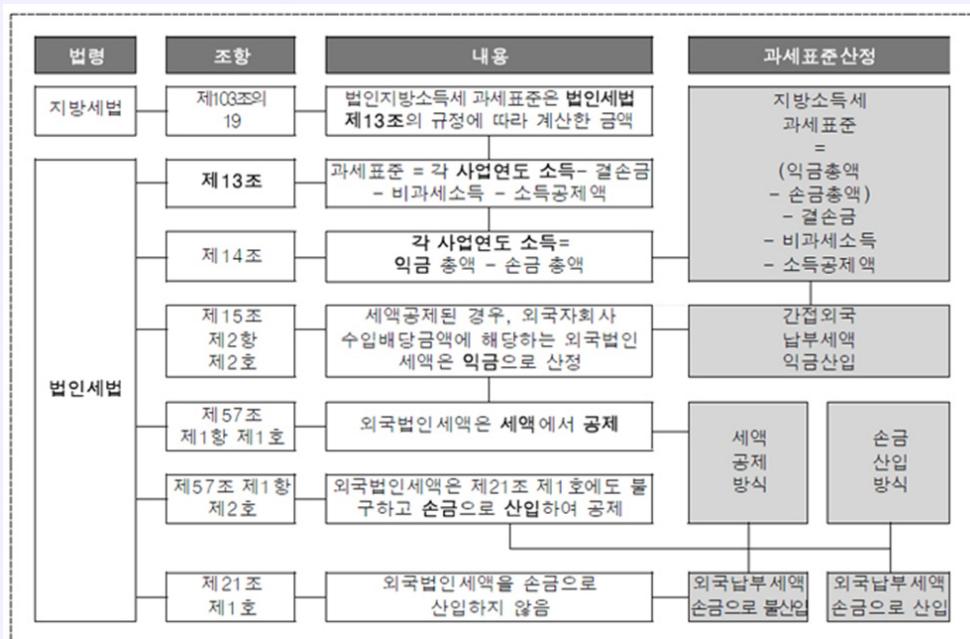
지방세법 제103조의 19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도 반하는 결과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의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세액공제 방식 또는 손금산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없이도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감사원심사결정(감심 2017-327, 2018.1.18. : 감심 2016심사835, 2018.5.24.)과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8

지0644, 2018.10.8.)도 동일한 취지이나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6지0872, 2018.2.6.)은 차이가 있음.

공제가능(조심 2016지0872, 2018.2.6.)	공제불가능(조심 2018지0644, 2018.10.8.)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있으나 그 조약 내용(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비교]



### 02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조심 2018지0383, 2018.8.30.)

지방세법 제103조의 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지방세특례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2013년 이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액 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제감면을 받은 효과가 있었을지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자체에 별도의 공제감면 규정이 없음.

### 03 조약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지방소득세 공제 범위(조심 2016지0872, 2018.2.6.)

조세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 집행적 조약으로서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등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한·중조세조약 제2조 제3항에서 한국의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에서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조세조약 제4조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일반적인 정의에 보면 인(人)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은 법인세계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계산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과세표준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으로 부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며, 청구법인은 국세와 지방소득세에서의 이중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나누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공제가 되지 아니함.

#### [반대사례] 감사원 심사결정사례(감사원 감심 2017-327, 2018.1.1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2014.1.1.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 지방세의 과세확대와 지방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시 부가세였던 지방세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율과 감면 규정만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에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지방세법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세전금액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전수익으로 계상되는 다른 국외원천소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음.

#### 04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적용(조심 2017지0333, 2017.6.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을 할 때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없고,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보다 세액공제방법이 유리하다고 보아 스스로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그 후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할 수 없음.

## 6. 자녀세액공제(법 § 97의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 연 1만5천원
2. 2명인 경우 : 연 3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만원

## 7. 연금계좌세액공제(법 § 97의 3)

### (1) 공제범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함)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2) 공제신청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 호에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2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상기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연금계좌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함)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3)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연금계좌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8. 특별세액공제(법 § 97의 4)

### (1) 보험료 세액공제

Min[장애인 공제대상자 지급보험료 등×1.5%, 100만원]

Min[기본공제대상자 지급보험료 등×1.2%,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2(제1호의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소령 §118의 4 ①)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아래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 공제로서 보험 · 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 · 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 공제로 표시된 보험 · 공제의 보험료 · 공제료
2. 장애인 이외 보험료(소령 §118의 4 ②)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료(「1.」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
  - (가) 생명보험
  - (나) 상해보험
    - (다) 화재 ·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바)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바)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보증(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예시

갑의 근로소득금액이 60,000,000원이고 보험료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갑의 보험료 공제세액을 산출은?

- (1) 갑 본인의 생명보험료 : 600,000원
  - (2) 부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550,000원
  - (3) 갑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생명보험료 : 600,000원
- 
- (1) 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 :  $600,000 + 600,000 = 1,200,000$ 원
  -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 : 550,000원
  - (3) 보험료 공제액 :  $1,000,000 + 550,000 = 1,550,000$ 원

###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일반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아래 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로서 총급여 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특정의료비)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시 소요된 비용을 말함]. 다만, 위 「1.」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각호 참조). 단, 의료비 비용에는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1.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함) 및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 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함)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특별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예시

갑의 총급여액 50,000,000이고 의료비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갑의 의료비세액 공제액을 산출함 [배우자, 아버지(70세), 어머니(장애인), 장남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임].

- (1) 갑 본인의 보약용 한약구입비 : 600,000원
- (2) 배우자 질병 치료비 : 800,000원
- (3) 아버지 고혈압 치료용 의약구입비 : 1,000,000원
- (4) 어머니 무릎수술비 : 1,500,000원
- (5) 장남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 : 500,000원

#### (1) 의료비 구분

구분	특정의료비	일반의료비	적용 제외
보약용 한약구입비(건강증진용)			600,000
배우자 질병 치료비		800,000	
아버지 고혈압 치료용 의약구입비	1,000,000		
어머니 무릎수술비	1,500,000		
장남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		500,000	
합계	2,500,000	1,300,000	600,000

#### (2) 의료비 공제액

- (☞) 특정의료비 : 2,500,000원  
(☞) 일반의료비 :  $1,300,000 - [50,000,000 \times 3\%] = -200,000$ 원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2,500,000 - 200,000 = 2,300,000$ 원(한도 7,000,000원)  
(☞) 지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  $2,300,000 \times 1.5\% = 34,500$ 원

**사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 수령시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판단(조심 2014종4075, 2014.10.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의 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의료기관 등에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13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〇〇〇원 중 쟁점의료비를 보험회사(새마을금고의 공제금)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3) 교육비 세액공제

#### 가)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 「나」 공제대상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소득세법시행령(§118의 6 ②)에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제2호 라목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이라 함)
    - (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이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이라 함)
    -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이라 함)
  - 다.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만 해당함]에 지급한 교육비
    -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다음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금액만 해당함]
-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 ·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인 특수교육비
- 가. 다음의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나)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소령 § 118의 6 ①)

1.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 ·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5. 다음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 중 ·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 예시

갑의 총급여액 80,000,000이고 교육비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갑의 교육비세액 공제액을 산출함 [아버지(70세), 어머니(68세), 장남, 차녀(16세)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임].

- (1) 대학생 장남 등록금 총액 : 6,000,000원
- (2) 차녀 외국고등학교 등록금 : 5,000,000원
- (3) 차녀 개인 미술교습비 : 1,000,000원
- (4) 어머니 재활교육 특수교육비 : 3,000,000원
- (5) 아버지 노인대학 등록금 : 2,500,000원

#### (1) 의료비 구분

구 分	공제금액	비 고
대학생 장남 등록금 총액	6,000,000	
차녀 외국고등학교 등록금	—	국외근로자 아님
차녀 개인 미술교습비	—	취학 전 아동 아님
어머니 재활교육 특수교육비	3,000,000	
아버지 노인대학 등록금		직계존속 제외
합 계	9,000,000	

#### (2) 교육비 공제세액

- (가) 교육비 공제대상 : 9,000,000원
- (나) 지방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  $9,000,000 \times 1,5\% = 135,000$ 원

### 사례

#### 주재특파원의 자녀학자금의 교육비 공제대상 판단(조심 2010서1763, 2012.2.28.)

주재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는 주재특파원 운영을 위해 지급된 업무관련 경비와는 달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재특파원은 해외 발령시 별도로 부임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체재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여비 등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또한 주재특파원의 자녀학자금의 경우에도 구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규정에 따라 특별공제(교육비공제)는 적용된다 할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사목 규정의 비과세되는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 (4) 기부금의 세액공제

##### 가) 개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보험판매원 등)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12.31.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1.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 1. 법정기부금

#####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소득금액"이라 함]×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

기부금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기부금을 기부한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하고 기부금의 성격이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 또는 종교단체기부금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기부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며 공제세액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기부금공제는 기부금세액공제의 10%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 나)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 예시

갑의 근로소득금액이 35,0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0,000원이다. 기부금 내역은 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 부산광역시청에 기부금 5,000,000원, 양산소재 불교단체 기부금 8,000,000원 불우 이웃돕기 성금 2,000,000원이다. 이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4,000,000원으로 처리하였다. 갑의 기부금 공제세액을 산출하라.

$$(1) \text{기준소득금액} : 60,000,000 + 4,000,000 = 64,000,000\text{원}$$

(2) 기부금공제한도

구 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지자체 성금(법정)	5,000,000	$64,000,000 \times 100\% = 64,000,000$	5,000,000
종교단체(지정)	8,000,000	$59,000,000 \times 10\% + \text{Min}[59,000,000 \times 10\%, 8,000,000] = 5,900,000$	5,900,000
불우이웃성금(지정)	2,000,000	$20\%, 2,000,000] = 7,900,000$	7,900,000
합 계	15,000,000		12,900,000

(3) 기부금 공제액 :  $12,900,000 - 4,000,000 = 8,900,000$ 원

(4) 지방소득세 기부금세액공제 :  $8,900,000 \times 15\% \times 10\% = 133,500$ 원

다) 기부금세액공제 신청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 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7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 기부금 세액공제액 추징특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1)」의 금액에서 「(2)」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추징세액 = (1) × (2)

-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
-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사례**  
종교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공제 판단(조심 2012부3078, 2012.9.26.)

○○단체는 구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1993.10.15. ○○○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0.12.31. ○○단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공익을 해하고 법인설립 허가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적법한 지정기부금단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는 경기도청 등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 (5) 공통적용 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보험료세액공제율, 의료비세액공제율, 교육비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6) 성실사업자 등의 표준세액공제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만3천원
성실사업자	1만2천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 있는 자	7천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만3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을 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성실사업자”라 함)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2항, 제162조의 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라 함)한다.

**사례**

표준공제의 직권경정과 중간예납액 신정(조심 2013서2164, 2013.11.6.)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표준공제 ○○○원이 공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중간예납세액이 산출세액의 2분 1에 1천원이 미달하는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제9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올바르게 경정하는 것은 그 잘못이 없음.

## 9.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법 § 98)

### (1) 개요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다음의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소령 §119의 2).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근로소득 세액감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3)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소득 세액감면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다음의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 또는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른 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II.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법 § 99)

#### (1) 감면대상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text{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text{투자금액} \times 0.3\%$$

중소기업<sup>1)</sup> 및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신규상장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12.31.까지[중소기업 중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증고품 및 리스(조특령 §3)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음)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1) 여기서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지특령 §51)

1. 기계장치 등 제조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sup>②)</sup>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2) 지원내용 : (상기 3가지 자산) 지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고유업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 ■ 중소기업의 범위 ■

1. 중소기업 요건(업종요건 + 규모요건 + 독립성 요건)
  - ④ 업종요건 : (주된 사업일 것) – 제조업, 광업 등(열거된 업종)
    - \*주된 사업 : 견업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
  - ⑤ 규모요건 : (중소기업 기준) – 매출액
    -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중소기업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졸업기준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 매출액이 각각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⑥ 독립성 요건 :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 독립성 유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2. 중소기업 유예제도(판정 특례) : 규모의 확대 등 사유발생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4년간(해당 연도와 그 후 3년간 : 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
 <유예 불인정 : 4가지>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창업 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3) 적용방법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2) “사업용 자산”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 특령 §53 ②, 조특령 §4 ②를 준용).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투자금액의 계산시 투자금액은 다음의 「1」 및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sup>3)</sup>

$$\text{투자금액} = \text{Max}[(1), (2)] - (3)$$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4) 신청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함)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0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입증 판단(국심 2005서0651, 2005.7.27.)

해상운송업은 다시 세분하여 외항운송업(6111), 내항운송업(6112), 기타 해상운송업(6113)으로 구분하는데, 수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운송시설 없이 운송업을 지원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실제 선박이 항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운송수단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에 포함됨.

##### 0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성(국심 2004중1019, 2004.7.1.)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바, 2000.2.7. 투자한 기계장치는 2000.7.12. 이후 투자한 기계장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2000.6.30.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7/100)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2000.6.30. 이전 투자한 기계장치 67백만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한이 경과한 후 투자한 별도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한 경우가 되지 아니함.

3)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지특령 §53 ③, 조특령 §4 ③ 준용한다.

##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 100)

### (1) 감면대상

- ①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업종요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열거된 업종
-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으로서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2) 지원내용

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50% 감면

2018.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나) 창업벤처중소기업 :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50%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벤처기업"이라 함) 중 중소기업<sup>4)</sup>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여기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지특령 §54 ①, 조특령 §5 ④부터 ⑤까지의 규정을 준용)

-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
-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연구개발비"라 함)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여기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업종(지특법 §58의 3 ④)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50% 감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 12.31.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sup>5)</su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벤처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11항·제12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text{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text{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라) 지원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면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6 제1항에 따른 재기증소기업인이 2018.12.31.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의 범위 판단은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

5)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범위(지특령 §54 ⑤, 조특령 §5 ⑩을 준용)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제품(“고효율제품 등”이라 함)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산업분류”라 함)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창업중소기업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지방세실무 감면부분을 비교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당시 사업용 자산(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30%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만,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마) 감면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 및 재기중소기업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16항 및 제99조의 6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자신의 인수범위와 창업의 판단(대법원 2011두11549, 2014.3.27.)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함.

###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 101)

#### (1) 감면대상

중소기업이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소기업 중 아래의 「가)」의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나)」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

용 자동차 충대수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19.12.31.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업종(지특법 §58의 3 ④)과 차이가 있음.

### 가)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產業) <sup>6)</sup>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터.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sup>7)</sup>	페.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의료업”)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지특령 §55 ①, 조특령 §6 ① 참조).

7)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지특령 §55 ②, 조특령 §6 ② · §54 ① 참조).

#### 나) 감면비율

분류	소재지	업종	비율
소기업 <sup>8)</sup>	수도권	도소매업	10%
		이외 업종	20%
	수도권 이외	도소매업	10%
		이외 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사업 <sup>9)</sup>	10%
		이외 업종	—
	수도권 이외	도소매업	5%
		이외 업종	15%

## (2) 감면내용 : 개인지방소득세의 일정률 감면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소득금액}}{\text{총소득금액}} \times \text{감면율}$$

- 8)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의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지특령 §55 ③, 조특령 §6 ⑤ 참조).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자물자체업 · 어업 · 축산업 · 광업 · 건설업 · 출판업 ·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9) “지식기반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지특령 §55 ④, 조특령 §6 ⑥ 참조).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3) 감면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법 § 101의 2)

### (1) 감면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12.31.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 (2) 감면범위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은 (1)+(2)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말함)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1만분의 2
-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1만분의 1

### (3) 감면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I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 1.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 102)

(1) 지원내용 : 연구 ·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비용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가)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sup>10)</sup>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 발생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20%(중소기업의 경우 30%)

(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Max(①, ②)

①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소급 4년간 평균발생액)×40%(중소기업 : 50%)

②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세액공제율(중소기업 : 2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2년간 10%, 중견기업 8%, 그 외 3~4%

\* 비중소기업 공제율

Min[3%+(일반연구인력개발비/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50%), 한도 4%]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18.12.31.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가) 연구 · 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3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100분의 20+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 · 인력개발비("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라 함)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래 「나.」에 해당하는 금액

10)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함)을 말한다. 다만, 조특령 §8 ①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지특령 §56 ①, 조특령 §9 ① 참조).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함)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여기서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sup>11)</sup>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함)×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12

위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합병법인 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합병 등"이라 함)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피합병법인 등"이라 함)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또한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sup>12)</sup>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①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 100분의 15
    - ② 「①」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0
  - 3) 중견기업<sup>13)</sup>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함)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2분의 1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지특령 §56 ④).

12)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지특령 §56 ③, 조특령 §9 ③ 준용).

13)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지특령 §56 ③, 조특령 §9 ④ 준용).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 (2) 대상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3) 공제방법 및 신청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면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성장 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01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판단(대법원 2014두2348, 2014.5.29.)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지출한 돈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회사가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4)목 및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4)목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

##### 02 중간퇴직정산금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판단(대법원 2013두22147, 2014.3.13.)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03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성격(대법원 2013두2655, 2013.6.27.)

[1]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4)목의 직무발명보상금이란 구특허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님.

[2]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구조세특례한법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됨.

##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 103)

### (1) 지원내용

신기술의 기업화하는 사업은 항상 매몰비용이 발생할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업산업개발을 장려목적으로 하드웨어 설비투자시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투자시(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리스에 의한 투자제외) 투자금액의 0.3%(중견기업<sup>14)</sup>의 경우 0.4%, 중소기업의 경우 0.5%)를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즉, 내국인이 2018.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 (중고품 및 금융리스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 (2) 대상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여기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sup>15)</sup>

2. 직업훈련용 시설<sup>16)</sup>

### (3) 세액공제방법 및 신청

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0.3~0.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투자금액의 계산시 투자금액은 다음의 「(1) 및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

14)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지특령 §57 ①, 조특령 §10 ① 준용).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적합 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5) “연구시험용 시설”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특령 §57 ①, 조특령 §10 ① 참조).

16) “직업훈련용 시설”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특령 §57 ①, 조특령 §10 ② 참조).

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령 §4 ③ 참조).

$$\text{투자금액} = \text{Max}[(1), (2)] - (3)$$

- (1) 총투자금액에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sup>17)</sup>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1)」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생산성향상시설투자), 제63조 제2항(안전설비투자), 제64조 제2항(에너지절약시설), 제65조 제2항(환경보전설비) 및 제66조 제2항(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서 같음]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01 신기술 개발연구비의 세액공제 대상 판단(조심 2014중3244, 2014.8.11.)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함(조심 2012서523, 2012.8.6.; 대법원 2011두6844, 2011.6.24., 같은 뜻임), 법인의 조직도상 다른 팀보다 연구·개발팀에 상무이사 1명, 이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점, 법인의 대표이사는 상무이사 ○○○가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접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에 ○○○가 다수의 거래처에 접대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함.

#### 02 연구시험용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단(조심 2014서0149, 2014.7.11.)

기업이 연구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그 금형의 구입비용은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외주협력업체에 설치된 것이므로 쟁점금형을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외주협력업체는 쟁점금형을 ○○○의 부품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형을 연구시험용 설비로 보기是很 어렵다.

#### 03 시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판단(조심 2011전2458, 2011.12.6.)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 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 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17) 진행률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말한다(법령 §69 ① 참조).

###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 104)

#### (1) 지원내용

- ①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50% 감면
-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 취득금액의 0.7% 세액공제(다만, 한도 : 당해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sup>18)</sup> 또는 기술<sup>19)</sup>(“특허권 등”이라 함)을 2018.12.31.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sup>20)</sup>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12.31.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12.31.까지 대여(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2) 지원대상 및 신청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양도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지원하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18)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한다(지특령 §58 ②, 조특령 §11 ③ 참조).

19)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지특령 §58 ②, 조특령 §11 ④ 참조).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20)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소액주주 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지특령 §58 ①, 조특령 §11 ① 참조).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법 § 105)

### (1) 감면대상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지정(등록)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영위하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첨단기술관련 산업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에서 생물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sup>21</sup>("감면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18.12.31.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18.12.31.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2) 감면범위 및 내용

1)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감면한도 : ① + ②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감면한도"라 함)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①」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②」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③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21) "생물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지특령 §59 ②, 조특령 §11의 3 ① 참조).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① 투자누계액 × 5%
- ② Min(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00만원, 투자누계액 × 2%)
- ③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 나. ①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 감면세액의 납부 : 위 ②를 적용받은 경우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감면세액 납부

상기 ② 및 ③의 금액을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2\)](#)

감면받은 상당액의 납부할 지방소득세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  
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00만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5.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22)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단시간근로자로서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수}}$$

여기서 「투자누계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다음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3) 감면신청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법 제10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사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숙소에 대한 직접 사용 판단(대법원 2014두35454, 2014.5.29.)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데, 위 숙소의 신축목적과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갑회사의 직원들이 위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06)

### (1) 지원대상

외국인기술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외국인기술자이다. 외국인기술자<sup>23)</sup>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

23) “외국인기술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지특령 §60 ①, 조특령 §16 ① 참조).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감면신청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 무자를 거쳐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01 외국인기술자의 면제 기산점(조심 2012부5132, 2013.4.19.)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02 외국인기술자의 세액공제 대상 판단(조심 2012부2699, 2012.10.18.)

대전제가 외국인임을 조건으로 하면서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5.21.)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경우 세법이 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법 § 106의 2)

### (1)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 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 (2) 특례적용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sup>24)</sup>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 01 외국인근로자의 판단기준(조심 2008서3462, 2009.1.16.)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 예규(서면2팀-65, 2008.1.10. 등 다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02 외국인근로자의 특례적용(조심 2008서0777, 2008.10.16.)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한 비과세 소득의 적용을 이미 받았고,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국제선 항공기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국내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IV.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1.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법 § 107)

#### (1) 감면대상 및 범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을 말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24)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외국인근로자”라 함)이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특수관계기업”이라 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2) 감면 배제

조세감면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법 § 108)

### (1) 이자소득 등 감면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금융회사 등<sup>25)</sup>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V.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 109)

### (1) 감면대상 및 범위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12.31.까지 투자(중고품 및 금융

25) “금융회사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지특령 §61 ①, 조특령 §18 ② 참조).

-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
-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 (8)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리스이외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 별표 2의 공정개선 · 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2. 첨단기술설비 :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3. 자재조달 · 생산계획 ·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함)
4. 고객자료의 통합 · 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함)
5. 구매 · 주문관리 · 수송 · 생산 · 창고운영 · 재고관리 ·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6.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sup>26)</sup>

## (2) 세액공제 특례 : 인터넷 이용시 이용비용의 7% 상당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및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12.31.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 (3) 세액공제신청

세액공제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26) 여기서 “시스템”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특령 §63 ①, 조특령 §21 ④ 참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 없음.

## 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0)

### (1) 감면대상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아래 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시설에 2017.12.31.까지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이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1의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과 그 밖에 소방 관련 물품
- 1의 3. 내진보강 설비
2.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3. 산업재해 예방시설
4. 광산보안시설
5. 비상대비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증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7. 기술유출 방지설비
8. 해외자원 개발설비

### (2) 세액공제 범위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 (3) 세액공제 신청

공제적용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1)

### (1) 대상시설

내국인이 다음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19.12.31.까지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

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중견기업<sup>27)</sup>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 ·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세액공제 신청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므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01 복합화력발전설비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 여부 판단(대법원 2012두19847, 2013.12.26.)

갑주식회사는 자신이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갑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갑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발전설비는 위 규정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함.

#### 02 발전설비의 에너지절약시설의 대상 판단(대법원 2008두18205, 2010.11.25.)

발전설비는 ○○로부터 이를 현물출자받은 1999.12.1. 당시 이미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에너지와 ○○중공업 사이의 공사계약서상 발전설비에 대한 인수성능시험이 완료된 후 인수통지서를 발급받은 때를 준공시기로 보기로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그 약정내용에 따라 발전설비가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중고품인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어 발전설비에 대한 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27)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준용(지특령 §64 ①, 조특령 §10 ① 준용)

##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2)

### (1) 대상시설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9.12.31.까지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이다.

### (2) 세액공제 내용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이 법 제103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 (3)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3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3)

### (1) 지원대상

내국인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12.31.까지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이외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이다.

### (2) 세액공제 내용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 1,000분의 4,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이 법 제103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 (3)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자

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4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6.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3의 2)

### (1) 지원대상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12.31.까지 투자(중고 품 및 금융리스 이외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대상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을 공제[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함]한다.

### (2) 세액공제 범위

투자금액의 1,000분의 7(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상기의 경우 또는 이법 제174조 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감면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174조 제4항을 적용할 때의 해당 신성장기술·원천기술 등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3의 3)

### (1) 지원대상

내국인이 2019.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영상콘텐츠"라 함)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함)이 있는 경우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 (2) 세액공제범위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0분의 7(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다만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 114)

설비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제고하고 마이스고,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1) 공제대상 : ①+②

- 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일 것
-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직접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일 것

### (2) 특례내용 : 지방소득세 공제

내국인이 2017.12.31.까지 투자(지특령 §67 ①, 조특령 §23 ① 참조)(중고품 및 금융리스이외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가) 기본공제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 가)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여기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④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의 졸업생수×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50만원)
- ②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등 근로자수×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
- ③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①-②]×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50만원)
- ④ 이월공제받은 금액×10%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 : 0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수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아래 「1」을 적용한다. 이 경우 「1」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백만 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1) 기본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중견기업은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sup>28)</sup>("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라 함)의 졸업생수<sup>29)</sup>×2백만원
-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수×1백50만원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에 따른 졸업생수-「나.」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수)×1백만원
-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71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10

청년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수는 다음에 따른 청년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수로 한다. 위 「(2) 추가공제금액」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1. 청년근로자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직접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함)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수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직접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와 「1.」에 따른 청년근로자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함)로 한다.

- 
- 28) 여기서 "학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라 함)를 말한다(지특령 §67 ① 2호, 조특령 §23 ③ 참조).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
- 2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접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함)로 한다(지특령 §67 ①, 조특령 §23 ④ 참조).

3. 60세 이상인 근로자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 「1.」에 따른 청년근로자수와 「2.」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함)로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8항의 규정한 범위와 같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로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는 다음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기의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아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계산식

상시근로자수=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2. 지원요건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기의 근로자는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기의 근로자는 제외)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투자의 개시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고용창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한다.

### (3) 추징대상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의 금액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으로 하여 그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지방소득세 =  $\text{Min}[(1)+(2), (3)] \times 10\%$

- (1) 상시근로자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과세연도로 함)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 (2) 상시근로자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 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첫번째 과세연도 : 「(1)」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두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 (3)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4) 세액공제 신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단(조심 2013부2354, 2014.5.1.)

중고품의 정의에 대해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중고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 규정한 바 있는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인지 여부는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한 바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쟁점자산은 하역장비의 임차계약이 금융리스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하였던 자산으로 고용창출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VI.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5)

#### (1) 세액공제대상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sup>30)</sup>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30) 여기서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병역”이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지특령 §68 ①, 지특법 §26의 2 ① 참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후 2017.12.31.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일 것

#### (2) 세액공제 범위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 (3)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5의 2)

#### (1) 세액공제대상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라 함)과 2017.12.31.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이라 함)하는 경우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 세액공제 범위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 (3) 세액공제 신청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5의 3)

#### (1)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나)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여기서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1+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2)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나)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3) 세액공제 신청

감면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 115의 4)

### (1) 세액공제대상과 범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의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함)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함]에 20만원(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 (2) 세액공제 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감면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법 § 115의 5)

### (1) 세액공제대상 및 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이 같은 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 사업에 2018.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2) 추징 및 납부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밖의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법 § 116)

### (1) 감면대상

근로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sup>31)</sup>,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중소기업체<sup>32)</sup>에 2012.1.1.(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2) 감면범위 : 취업 후 3년간 지방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

31)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지특령 §69 ①, 조특령 §27 ① 준용).

32) 여기서 “중소기업체”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지특령 §69 ①, 조특령 §27 ③ 준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함)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이라 함)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3) 감면신청

감면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4) 감면추징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개인지방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 117)

### (1) 공제대상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하도급 거래 공

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고용하는 경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함)에 해당될 것

#### (2) 공제범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 (3) 공제세액 추징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1일 3/10,000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이란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1)」의 기간과 「(2)」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2) 1일 1만분의 3

#### (4) 공제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 118)

#### (1) 세액공제대상

중소기업이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sup>33)</sup>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할 것

33)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지특령 §71 ①, 조특령 §27의 4 ① 준용).

## (2) 세액공제 범위

- 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청년등”이라 함) 상시근로자<sup>34)</sup>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sup>35)</sup>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
-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상시근로자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해당 기간의 개월수
-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수의 합/해당 기간의 개월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계산례를 준용한다.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2) 「(1)」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4)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여기서 사회보험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                         |
|---------------------------|-------------------------|
|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34)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 하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지특령 §71 ②, 조특령 §27의 4 ② 준용).
  - 35)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를 한도로 한다(지특령 §71 ③, 조특령 §27의 4 ③ 준용).

### (3) 세액공제 신청

감면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상시근로자의 계산과 중소기업 판단(대법원 2009두23747, 2010.5.13.)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비록 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위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VII.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 § 119)

#### (1) 감면대상 및 통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sup>[36]</sup>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sup>[37]</sup>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 
- 36) “소비성서비스업 이외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정)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함)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정)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지특령 §72 ①, 조특령 §28 ① 참조).
-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통합법인”이라 함)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일 것
- 37)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을 말한다(지특령 §72 ①, 조특령 §28 ② 준용).

- 소멸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될 것
-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존속(신설)되는 통합법인의 주주가 될 것
- 취득주식/출자의 가액이 통합일 현재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일 것

\* 사업용 고정자산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 (2) 지원내용 :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이월과세	$\frac{\text{(개인)} \longrightarrow \langle \text{통합자산 등 양도} \rangle}{\text{[개인단계] : 양도시 과세 (X)}} \longrightarrow \frac{\text{(법인)} \longrightarrow \text{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text{[법인단계] 법인에게 과세 (O)}}$
------	---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함)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분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월과세특례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4) 이월과세 즉시추징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폐지의 판단은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100분의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지특령 §72 ③, 조특령 §28 ⑨~⑪ 준용).

- (가)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100분의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0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례

**01 중소기업통합 관련 이월과세 신청 판단(조심 2010구4060, 2011.8.10.)**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중소기업간 통합을 이유로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을 적용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02 중소기업통합 관련 이월과세 적용(조심 2010구1950, 2010.10.10.)**

「이월과세」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법 § 120)

### (1) 적용대상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sup>38)</sup>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여기서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지특령 §73 ①, 조특령 §29 ② 준용). 이 경우 사업양수도 방식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사업장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후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sup>39)</sup>이 전환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38) “소비성서비스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지특령 §73 ①, 조특령 §29 ③ 준용).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업 및 관광유홍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9) “법인의 자본금 금액”的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

## (2) 지원내용 :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 (3) 즉시 추징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폐지의 판단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지특령 §73 ④, 조특령 §29 ⑥~⑧ 준용).

- (가)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 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시 사업폐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에 추징사유와 적용방법이 동일하다.

### (4) 적용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 세표준신고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법인전환 관련 이월과세 적용(조심 2014부2363, 2014.7.29.)

조세특례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의 보상금 지급내역상 문화재로서 사업용 고정자 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자산가액으로서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지특령 §73 ①, 조특령 §29 ⑤ 준용).

### 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 121)

#### (1) 적용대상 : ①+② 동시총족

- 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전환전사업”이라 함)을 전환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전환전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을 2018.12.31.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② 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함)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하고,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 (2) 지원내용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거주자가 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참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이연	(전환전사업) ——〈고정자산 양도시〉	→ (전환후사업) —— 전환사업 기계장치취득
	[고정자산 양도차익] : 과세 (X)	[양도시] 고정자산 양도시 과세(O)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식에서 전환전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 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 ·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text{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 \frac{\text{전환전사업양도가액}}{\text{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times \frac{\text{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text{산출세액}} = \frac{50}{100}$$

#### (3) 감면추징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분 개

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감면추징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2. 예정가액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1)」에 따른 기간과 「(2)」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1)×(2)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4) 감면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 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감면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 제1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사례

사업전환 관련 감면 적용(대법원 98두3990, 2001.3.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전환전사업(전환전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 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2항 소정의 면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가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의 개시 일까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함.

## 4.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 122)

### (1)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 하던 사업("전환전사업"이라 함)을 다음에 따라 2018.12.31.(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12.31.)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사업"이라 함, 제조업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 업종을 말함)으로 전환하는 경우일 것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2) 감면범위 :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사업전환일<sup>40)</sup>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sup>41)</sup>(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환 전사업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기준총 매출액"이라 함)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또한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감면추징

감면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

40) 여기서 "사업전환일"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지특령 §75 ①, 조특령 §30의 2 ② 참조).

1. 법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사업의 개시일

2.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사업전환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41) 여기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지특령 §75 ②, 조특령 §30의 2 ④ 참조).

음과 같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납부할 세액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1)」에 따른 기간과 「(2)」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이자상당가산액} = (1) \times (2)$$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4) 감면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법 § 123)

#### (1)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 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이는 내국법인이 주주 및 출자자("주주 등"이라 함)로부터 201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를 말한다.

#### (2) 지원내용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함)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text{양도차익상당액} = \frac{\text{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 \frac{\text{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게 증여한 금액}}{\text{해당 자산의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text{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 \text{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 (3) 절차 등

감면적용받으려는 주주 등은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4) 추징

증여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아래에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이자상당 가산액」이란 납부세액에 「(1)」의 기간과 「(2)」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2) 1일 1만분의 3

#### 사례

#### 재무구조개선사업 관련 특별세액 감면적용요건(대법원 2005두685, 2006.1.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임. 그리고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목적 및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함.

## VIII.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1.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 124)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의금산입 혜용하고 부동산양도차익의 결집효과에 따른 조세부담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1) 적용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2017.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할 것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요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봄)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감면세액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이 경우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감면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2) 감면범위 : 개인지방소득세 6년간(4년) 면제 후 3년간(2년) 50% 감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다만,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3) 감면추징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자상당가산액 = (1) × (2)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시례

#### 01 공장이전요건과 감면 적용범위(조심 2012중4818, 2014.9.3.)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출판업의 공장시설 및 본점 기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저하 등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2006~2008년에 특별한 사정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점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02 공장이전 감면 적용범위(대법원 2004두7719, 2005.8.25.)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취지나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정의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95누7222, 1995.9.29.).

#### 03 신공장에 대한 감면요건(국심 2000서1290, 2001.3.29.)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공장 사업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사업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이연세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04 신공장 기액의 범위(대법원 95누7222, 1995.9.29.)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임)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이 상당함.

##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 125)

### (1) 적용대상

1. 2018.12.31.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8.12.31.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2) 감면범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3) 감면신청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법 § 126)

#### (1)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감면

##### 가) 적용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함)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text{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 = 1천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text{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나) 감면범위

배당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분 배당소득 = 배당소득 총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 소득분 배당소득
-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 소득분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다) 감면신청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 농업인의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면

### 가) 감면범위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초지”라 함)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81조까지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여기서 농지의 범위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 나) 감면추징

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며 납부세액은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지분 양도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납부세액=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양도한 출자지분 총출자지분

②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세액에 (1)에 따른 기간과 (2)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1)×(2)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

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다) 감면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

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3) 농업인의 농지 이외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

#### 가) 감면범위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농지 등"이라 함)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 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sup>42)</sup>를 제외한다.

#### 나) 즉시납부

이월과세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의 납부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42)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다) 특례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4) 면제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준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 4.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법 § 127)

#### (1) 영어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감면

##### 가) 적용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함]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

##### 나) 감면 범위

배당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2)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분 감면

##### 가) 적용대상

어업인<sup>43)</sup>이 2018.12.31. 이전에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43) 여기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토지등”이라 함)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 군 · 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지특령 §80 ②, 조특령 §64 ③ 참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감면추징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 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ext{추징세액} = \text{어업용 토지 등 감면세액} \times \frac{\text{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text{총출자지분}} \times 10\%$$

(3) 감면신청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 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5.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법 § 128)

(1) 농지 및 초지의 현물출자 양도소득분 감면

가) 적용대상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감면범위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2) 농지 등 이외 부동산 현물출자 양도소득분 이월과세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3) 배당소득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 소득금액+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 소득금액("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4) 감면신청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29)

### (1) 감면대상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sup>44)</sup>가 8년 이상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sup>45)</sup>한 토지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농업법인"이라 함)에 201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

이 경우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의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2) 감면범위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제5항의 토지<sup>46)</sup>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한다.

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의미하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경우 농지는 양도일(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참조)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농지소재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44)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말한다(지특령 §82 ①, 조특령 §66 ① 참조).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5) "직접 경작 또는 재배"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지특령 §82 ②, 조특령 §66 ⑬ 참조).

46) 여기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하며 이에 따른 경작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82 ③ 참조).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에는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나)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라 함)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 감면추징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다음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4) 감면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2항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사례

#### 01 자경농지의 범위(조심 2014전2339, 2014.9.3.)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위에 무단으로 적치된 컨테이너 등을 치운 것으로는 보이나 매매계약을 체결(2013.4.12. 구두계약)하고 2013.7. 12. 쟁점토지를 인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면서 고구마 모종 등을 심은 것은 농지취득증명원 발급 등을 위해 외관상 농지로 보이게 한 것에 불과함.

#### 02 자경농지 감면적용 범위(조심 2012서3872, 2012.12.27.)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참고), 휴경기간이 1년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현장조사에서 검은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용 기자재나 농약 등을 보관하는 장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소재 부분 171㎡는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 감면을 부인함.

#### 03 자경농지 감면적용 판단(조심 2012구0400, 2012.10.9.)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당한 부분 이를 돋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함.

#### 04 자경농지의 감면요건과 산정기준(대법원 2011두6585, 2012.8.30.)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시”라 함)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시부터 편입시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시와 양도시 및 편입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할 것이 아닌 점,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식에서의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시기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님.

## 05 자경농지 제외대상 판단기준일(대법원 2005두3899, 2006.2.23.)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님.

##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30)

### (1) 감면대상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라 함)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sup>47)</sup>(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를 폐업을 위하여 2017.12.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라 함)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2) 감면범위

- ①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하고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감면세액} = \text{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times \frac{\text{축사용지면적}}{\text{총양도면적}}$$

(다만, 축사용지면적이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함)

47) 여기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2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해당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면제대상 소득<sup>48)</sup>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3) 세액추징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축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감면신청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2 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법 § 131)

### (1) 적용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일정 요건에 따라 대토를 하는 경우<sup>49)</sup>에 해당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

48) “면제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지특령 §83 ④, 조특령 §66의 2 ⑩ 참조).

면제대상 소득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 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9) 여기서 “대토하는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지특령 §84 ①, 조특령 §67 ③ · ④ · ⑤ 참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양도소득금액<sup>50)</sup>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3) 감면적용 배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의 감면제외대상 토지<sup>51)</sup>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감면추징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5) 감면신청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50)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라 함)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기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지특령 §84 ②, 조특령 §67 ⑥ 참조).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1) 여기서 “감면제외대상 토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지특령 §84 ②, 조특령 §67 ⑦ 참조).

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01 농지대토 감면 적용(조심 2014중0449, 2014.10.16.)

종전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이고, 청구인은 곡물판매업의 허가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으며, 그 슈퍼마켓도 사실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출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판매한 농사물의 원산지도 ○○시로 확인되는 점, ◇◇◇에서 배추 모종을 구입한 사실도 판매자가 확인하였고, 생강, 대파 등 농작물의 생산량, 가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02 농지대토 관련 감면 적용(조심 2014중3344, 2014.10.6.)

항공사진상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농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2011년 9월부터 토목공사 등 개발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고물상으로 사용승인받았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점, 부동산 임대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999m<sup>2</sup>는 양도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 03 대토농지 감면 적용 배제(조심 2014중0896, 2014.6.30.)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내인 점,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청구인 주소지 전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대토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에서 청구인의 딸인 ○○○가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9.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법 § 131의 2)

### (1) 적용대상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농업인"이라 함)이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농지 등"이라 함)을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라 함)에 양도한 후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 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내에 환매한 경우

## (2) 특례적용

이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6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 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특례신청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의 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IX.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32)

### (1) 사업시행자에 양도시 감면

가) 적용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감면범위

①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sup>52)</sup>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sup>53)</sup>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감면한다.

#### 다) 감면추징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이때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text{이자상당가산액} = (1) \times (2)$$

-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 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특약체결자"라 함)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라) 감면신청 등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

- 52) 여기서 "보상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85 ①, 조특령 §72 ① 참조).  
"보상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보상채권"이라 함)을 말한다.  
53)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85 ①, 조특령 §72 ② 참조).  
(1)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감면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 (2) 지정 전 사업자에 대한 양도시 감면

### 가) 적용대상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라 함)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지정 전 사업자"라 함)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함)을 2015.12.31.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 나)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당시 법률에 따른다.

## (3) 감면주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아래의 기한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 되는 날
- (나)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 (4) 신청 등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01 공익사업 관련 감면 적용 판단(조심 2014서1578, 2014.5.19.)

환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한 이 건의 경우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환매대금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고,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상당액과 증감액 등을 합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조심 2014부1084, 2014.4.22. 같은 뜻임).

##### 02 공익사업관련 감면 적용기간 산정(조심 2014중0074, 2014.5.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约定된 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인 점,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때부터 3년이 넘도록 당해 공익사업을 차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03 공익사업 관련 양도분 감면 적용(조심 2014부1084, 2014.4.22.)

환매로 취득한 자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환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그 취득시기로 하고,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상당액과 증감액 등을 합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33)

###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양도시 감면

#### 가) 적용대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이라 함) 내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감면범위 : 다음에 따른 세액을 감면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여기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2)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 등 양도시 감면

#### 가) 적용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감면범위

다음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sup>54)</sup>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54) 여기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86 ②, 조특령 §74 ② 참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 (3) 취득의제

감면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을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 (4) 감면신청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 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01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조심 2012서4171, 2012.12.11.)

주소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한편,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의제취득일 규정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 제2항 제2호 규정의 「취득일」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0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 적용사유(조심 2010중3648, 2010.12.31.)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균무상 형편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충청남도 천안지역에서 1년 정도를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 예외사유 중 균무상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3.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법 § 134)

#### (1) 적용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sup>55)</sup>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sup>56)</sup>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지방이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준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2) 감면범위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3) 감면신청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55) 여기서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87 ①, 조특령 §54 ① 참조).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56) 여기서 “지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87 ①, 조특령 §79의 3 ①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제79조의 8 및 제79조의 10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라 함) 밖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지방”이라 함)을 말한다.

**사례**

혁신도시 지정고시일 기산일(조심 2009서1474, 2009.11.19.)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었고, 이는 양도당시 개발계획의 승인 등 사업의 시행으로 이어졌으므로 쟁점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이라고 봄이 타당함.

##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법 § 135)

###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감면

#### 가) 적용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12.31.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나) 감면범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다) 감면배제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2)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감면

#### 가) 적용대상

2019.12.31.까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 나) 감면범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다) 감면배제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용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용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추징절차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다음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1)」에 따른 기간과 「(2)」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1)×(2)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추징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4) 감면신청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법 § 136)

##### (1) 적용대상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12.31. 이전에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3) 감면신청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X.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 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 137)

#### (1) 적용대상

내국인<sup>57)</sup>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12. 31.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

-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2) 종업원용 기숙사
-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sup>58)</sup>
-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sup>59)</sup>
-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57) 여기서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0 ①, 조특령 §94 ① 참조).

“내국인”이란 「(1) 내지 (6)」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58) 여기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제3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0 ①, 조특령 §94 ③ 참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9) 여기서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0 ①, 조특령 §94 ④ 참조).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 (2) 감면범위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떨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상기 ① 또는 ②의 시설인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sup>60)</sup>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에서 공제하며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공제세액} = \text{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 \times 7\% \times [\text{사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용 총연면적}/\text{주택 등의 총연면적}]$$

※ 해당 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10%를 적용한다.

## (3) 세액공제 추징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1)」의 기간 및 「(2)」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이자상당가산액} = (1) \times (2)$$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38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2) 1일 1만분의 3의 율

## (4)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4 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4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60)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0 ①, 조특령 §94 ② 참조).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법 § 137의 2)

### (1)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항에 따라 월세액<sup>61)</sup>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2) 적용범위

소득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나,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액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법 § 138)

### (1) 적용대상

내국인<sup>62)</sup>이 임대주택(“임대주택”이라 함)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61) 월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을 준용한다(조특령 §95 ② 참조).

“월세액”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의 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 “월세액”이라 함)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나. 그 밖의 토지 :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62) 여기서 내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지특령 §91 ①, 조특령 §96 ① 참조).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조특령 §96 ② 각호).

1.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일 것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 나. 그 밖의 토지 :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감면범위

2019.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3) 감면추징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5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의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각 호<sup>63)</sup>에 따른다.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sup>64)</sup>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자상당가산액=(1)×(2)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2) 1일 1만분의 3

자로 지정되었을 것

63) 여기서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

64) 여기서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지특령 §91 ④, 조특령 §96 ④ 참조).

④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 (4) 감면신청 및 절차

감면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8조의 3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포함 판단(조심 2014중0180, 2014.10.8.)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모두 3억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 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

#### (5) 감면추징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39)

#### (1) 적용대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참조)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함)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 (3) 감면신청 및 절차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주택임대기간"이라 함)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의한다.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01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조심 2014중1297, 2014.7.7.)**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범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선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이 신축설계 및 자금지급부터 임대까지 관리한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므로 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02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분 중과세 적용(대법원 2010두27806, 2014.2.27.)**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03 장기임대주택수 계산 적용(조심 2009서1481, 2009.6.19.)**

장기임대주택수의 계산은 거주자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만약 세대별로 장기임대주택수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으나 이는 소득세 과세가 세대중심이 아닌 거주자별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세법 체계에 부합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5호에 미달하는 주택을 장기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그 세대별로는 장기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님.

**04 다가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적용(국심2007서0083, 2007.5.22.)**

쟁점토지는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로서 동 부수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경우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주택의 소유자와 공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 및 다른 부수토지와 함께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5.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법 § 140)

### (1) 적용대상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 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 나.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
  - 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3) 감면신청 및 절차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신청,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법 § 140의 2)

### (1) 적용대상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1. 2018.12.31.까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거주자가 위 「2.」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 기준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times \frac{\text{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2) 적용범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면제한다. 이 경우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 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특례적용 신청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법 § 140의 3)

### (1) 적용대상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2018.12.31.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추징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아래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1.」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을위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등”이라 함)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8.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법 § 141)

### (1) 적용대상

① 거주자가 미분양 국민주택<sup>65)</sup>을 1995.11.1.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② 거주자가 미분양 국민주택<sup>66)</sup>을 1998.3.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

65) “미분양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4 ①, 조특령 §98 ① 참조).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66) 여기서 “미분양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 제5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4 ⑤, 조특령 §98 ⑤ 참조).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2.28.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 (2) 감면특례적용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3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95.11.1.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3.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등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3) 감면신청 등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화정신고(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국민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국민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1998.1.1.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정)

# 9.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법 § 142)

## (1) 적용대상

거주자가 2008.11.3.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sup>67)</sup>(“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 세율적용특례

지방미분양주택의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등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중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0.6~3.8%)을 적용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0조 및 1세대 3주택 등 제103조의 3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신고절차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2 제2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2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2를 준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 1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법 § 143)

#### (1) 적용대상

- 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

67) 여기서 “지방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2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5 ①, 조특령 §98의 2 ① 참조).

(1)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사업주체”라 함)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11.2.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11.3.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11.3. 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 서 같음)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11.3.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있는 미분양주택<sup>68)</sup>을 다음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거주자인 경우 :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 밀접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3) 적용특례

토지·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등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중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0.6~3.8%)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0조 및 1세대 3주택 등 제103조의 3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3 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법 제14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3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

68) 여기서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3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6 ①, 조특령 §98의 3 ①·② 참조).

법시행령 제98조의 3을 준용한다.

사례

미분양주택의 양도분 특례적용(조심 2014부0837, 2014.4.23.)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납입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없이 양도소득을 재계산함.

## 11.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법 § 144)

#### (1) 적용대상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제143조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법 § 145)

#### (1) 적용대상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2.11.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sup>69)</sup>을 2011.4.30.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4.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다음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함)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69) 여기서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4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7 ①, 조특령 §98의 4 ①·② 참조).

-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60
-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80
-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00

여기서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분양가격인하율} = [\text{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text{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 / \text{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times 100$$

### (3) 적용특례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등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중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0.6~3.8%)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0조 및 1세대 3주택 등 제103조의 3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4 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4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4를 준용한다.

## 13.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의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법 § 146)

#### (1) 적용대상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사업자<sup>70)</sup>("사업주체 등"이라 함)가 준공 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70) 여기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5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8 ①, 조특령 §98의 5 ① 참조).

(1) 주택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5, 제1호의 8 및 제1호의 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sup>71)</sup>을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5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

## (3) 적용특례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등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중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0.6~3.8%)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0조(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5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5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5를 준용한다.

# 14.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법 § 147)

## (1) 적용대상

내국인이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sup>72)</sup>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미분양주택"이라 함)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사업자<sup>73)</sup>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

신투자회사 등

- (4)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7, 제1호의 9 및 제1호의 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71) 여기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5 제2항 ·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지특령 §98 ①, 조특령 §98의 5 ② · ③ 참조).
- 72) 여기서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6 제1항 ·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9 ①, 조특령 §98의 6 ① · ② 참조).
- 73) 여기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6 제3항을 준용한다(지특령 §99 ①, 조특령 §98의 6 ③ 참조).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3) 적용특례

지방세법 제90조 및 1세대 3주택 등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중과세(제103조의 3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를 적용할 때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6을 준용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6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 6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 15.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법 § 148)

### (1) 적용대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sup>74)</sup>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sup>75)</sup>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4.1.부터 2013.12.31.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 (2) 감면범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3) 적용특례 등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74) 여기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을 적용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1항 ·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0 ①, 조특령 §99의 2 ① · ② 참조).

75)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的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를 준용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이라 함)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이라 함)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text{양도소득 금액} \times (\text{취득일부터 } 5\text{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text{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 XI.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 § 149)

#### (1) 적용대상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12.31. 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2) 감면범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3) 감면신청

세액 감면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

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 150)

### (1) 해당 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30% 초과시 세액공제

#### 가) 적용대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 을 초과하는 경우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 나) 세액공제 범위

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0.3\%$

-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 –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
- (2) 한도액 : 각 과세연도 개인개방소득세의 10%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2) 해당 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30% 미만시 세액공제

#### 가) 적용대상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 만이거나 없는 경우

#### 나) 감면범위

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0.3\%$

-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times 30\%$
- (2) 한도액 : 각 과세연도 개인개방소득세의 10%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3) 감면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 여부 판단(조심 2012서5359, 2013.9.11.)

선박 제조과정을 볼 때 녹방지 처리공정이 선박생산에 있어 필수적이고, 블록제작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선박 생산공정의 일부분으로 보이며, 원자재의 녹방지 처리공정 투입시점을 선박 생산공정 투입시점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원자재가 생산공정에 투입된 이후의 물류비용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제3자물류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 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 151)

### (1)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가) 감면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을 2019.12.31.까지 지급하는 경우

#### 나) 세액공제 범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지특법 §102)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가) 적용대상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sup>76)</sup>을 2019.12.31.까지 기부하는 경우

76) 여기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17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3 ①, 조특령 §104의 17 ① 참조).

#### 나) 세액공제범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103)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 (3)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가) 적용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sup>77)</sup>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비용<sup>78)</sup>을 2019. 12.31. 까지 지급하는 경우

#### 나) 세액공제 범위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지특법 §102)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 등」으로 본다.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법 § 152)

### (1) 적용대상

대한민국 국민 등<sup>79)</sup>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12.31. 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77) 여기서 “사전취업계약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17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3 ②, 조특령 §104의 17 ② 참조).

78) 여기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17 제3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3 ③, 조특령 §104의 17 ② 참조).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이 중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를 말한다.

79)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21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4 ①, 조특령 §104의 21 ① 참조).

## (2) 감면범위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사업장부분을 축소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3) 감면추징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2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아래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1)×(2)

-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2) 1일 1만분의 3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21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법 § 153)

### (1) 적용대상

가) 적용대상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 2, 제2호의 8, 제121조의 8 제1항 또는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사업
  - 가. 「(3)」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나. 「(10)」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 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9)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10)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나) 감면기준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함)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상의 감면기준<sup>80)</sup>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다) 감면범위 : 다음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감면

감면대상세액=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상당액×외국인투자비율×당해 연도 감면율

- 지방소득세 상당액 : 총산출세액×[감면대상 사업소득 과세표준/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총자본금
- 당해 연도 감면율 : 100% 또는 50%(5년 이내 100%, 그 후 2년 이내 50%)

여기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상기의 적용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함)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sup>81)</sup>에 따라 감면대

80) 여기서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

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쟁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기한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기한중 지방세법의 개정(2014년)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는 감면되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1)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이후에는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 등을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종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2004.12.9. 선고 2003두13076 판결; 2004.11.25. 선고 2003두12929 판결;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다수), 종전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의해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결과 그 감면이후의 법인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규정은 그 조문에 의해 법인세 감면을 받던 자가 향후 과세표준 변경 등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기간 간에는 특히 그 지방세감면을 한다는 취지로 정한 바는 없다.

(2) 그러므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기존의 외투법인이 감면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1.1. 이후 법인세는 감면을 받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등 감면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2014.1.1. 이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별개의 쟚점이라 할 것이다.

### (2) 감면신청 및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

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이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유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인지방소득 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 (3) 감면신청과 결정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감면기간의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5) 감면적용 배제

#### 가)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외국법인등”이라 함)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같음 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또는 대한민국 법인(“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함)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대한민국국민 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기업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
  -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 등

3. 외국투자가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 나) 주식 등 소유비율상당액 또는 대여금상당액 범위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 등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봄)상당액 또는 대여금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6) 사업양수 등 외국인투자 감면 : 5년간 50%, 그 후 2년간 30% 감면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sup>82)</sup>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 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 (7) 감면결정 효력의 상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

#### (8) 감면한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감면한도"라 함)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82) 여기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5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5 ④, 조특령 §116의 2 ⑯ 참조).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사업의 경우 : 외국인투자누계액<sup>83)</sup>의 1,000분의 50

- 나. 그 외의 경우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4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9까지 및 제3호, 제1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 ×200만원
-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수×150만원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수)×100만원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위 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위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4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감면한도"라 함)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한도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9) 감면주장

①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

83) 여기서 "외국인 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2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5 ⑤, 조특령 §74 ② 참조).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 2 제9항·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로서 법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함)을 말한다.

여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조세특례제한세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상시근로자수=해당 기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해당기간의 개월수

### 사례

#### 0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외투기업 감면(조심 2013서3302, 2014.7.17.)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의 범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를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도기술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함(조심 2011부4731, 2012.4.23. 같은 뜻임).

#### 02 일부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시 감면적용(조심 2011부4731, 2012.4.23.)

쟁점부품은 청구법인의 건설기계장비에만 사용되고 호환성이 없어 비법용성 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에 대하여 핵심공정인 기획, 구체화, 시제품 제작, 양산도면 확정 등의 단계를 수행하고, 협력업체의 제조과정을 지휘·감독·통제하며, 생산된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품질을 검사한 후 청구법인의 상표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불복청구결과에 대한 재조사 사실관계 및 기술적 사양을 잘못 확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부품업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소득이 감면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 § 154)

### (1) 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8.12.31.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sup>84)</sup>(“감면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2) 감면범위

#### 가) 감면적용기간 및 감면율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 나) 감면한도

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0.3\%$

(1) 투자누계액 × 5% +  $\text{Min}[\text{(1)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만원}, \text{(2) 투자누계액} \times 2\%]$

(2) 한도액 :  $\text{Min}[\text{(1) 상시근로자수} \times 200\text{만원}, \text{(2) 투자누계액} \times 10\%]$

①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감면한도”라 함)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1. 투자누계액<sup>85)</sup>의 100분의 5

84) 여기서 “생물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4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6 ①, 조특령 §74 ② 참조).

85) 여기서 “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4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6 ②, 조특령 §106의 14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2백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②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투자누계액의 5%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1) 상시근로자수×100만원, (2) 투자누계액×2%]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상시근로자수×100만원, (2) 투자누계액×2%]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3) 감면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4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참조).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 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55)

### (1) 적용대상 [①+②]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이라 함)을 하기 위한 투자일 것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제주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에 2018.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다음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

1. 위 제1호에 따른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에 따른 투자<sup>86)</sup>
2. 위 제2호에 따른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2항에 따른 투자
3. 위 제3호에 따른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3항에 따른 투자

제2호의 사업인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제3호의 사업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투자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2) 감면범위

#### 가) 감면적용기간 및 감면율

① 사업개시 후 5년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사업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86) 여기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7 ②, 조특령 §116의 15 ① 참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② 5년 감면기간 경과 이후 2년간

감면기간 경과 이후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사업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나) 감면한도

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0.3\%$

(1) 투자누계액  $\times 5\% + \text{Min}[(1) \text{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만원}, (2) \text{ 투자누계액} \times 2\%]$

(2) 한도액 :  $\text{Min}[(1) \text{ 상시근로자수} \times 200\text{만원}, (2) \text{ 투자누계액} \times 10\%]$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감면한도"라 함)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투자누계액<sup>87)</sup>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의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2\text{백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투자누계액의 5%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1)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만원}$ , (2) 투자누계액  $\times 2\%$ ]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만원}$ , (2) 투자누계액  $\times 2\%$ ]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아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87) 여기서 "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4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07 ②, 조특령 §116의 15 ④).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 「2.」 또는 「3.」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 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 (3) 감면추징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7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4) 감면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56)

### (1) 적용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이라 함)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사업
3.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 2018.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위 「1. · 3.」 및 「5.」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라 함)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함),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라 함) 안에서 제116조의 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sup>88)</sup>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2. · 4.」 및 「6.」, 「7.」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88) 1. 제조업  
2. 연구개발업  
3.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4. 제5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제116조의 15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여기서 「1. · 3.」 및 「5.」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2) 감면범위

### 가) 감면적용기간 및 감면율

#### ① 사업개시 후 5년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사업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 ② 5년 감면기간 경과 이후 2년간

감면기간 경과 이후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사업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 나) 감면한도

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0.3\%$

(1) 투자누계액 × 5% +  $\text{Min}[(1) \text{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만원}, (2) \text{ 투자누계액} \times 2\%]$

(2) 한도액 :  $\text{Min}[(1) \text{ 상시근로자수} \times 200\text{만원}, (2) \text{ 투자누계액} \times 10\%]$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감면한도”라 함)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투자누계액<sup>89)</sup>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 나. 「1.」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2백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투자누계액의 5%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1) 상시근로자수×100만원, (2) 투자누계액×2%]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기 「2.」 또는 「3.」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아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3) 특례배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며, 제121조의 19 제1항 제3호[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 17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9) 여기서 “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1 제4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지특령 §108 ③, 조특령 §116의 21 ④ 참조).

#### (4) 감면신청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조의 21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법 § 157)

#### (1) 적용대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8.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여기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 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을 운영하는 사업

#### (2) 감면범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내용 동일

#### (3) 감면추징

① 상기 「2.」 또는 「3.」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감면추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백만원)

#### (4) 감면신청 등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6 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법 § 158)

#### (1) 적용대상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 밀접한 지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에 2018.12.31.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에서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준<sup>90)</sup>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감면대상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경우

#### (2) 감면범위

##### 가) 감면기간 및 감면율

###### ① 사업개시 후 5년간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90) 여기서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6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10 ①, 조특령 §116의 26 ① 참조).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여기서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중심지(수도권과 밀접 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에 2015.12.31.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에서 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감면대상사업"이라 함)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② 5년 감면기간 경과 이후 2년간

감면기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나) 감면한도

세액공제액 :  $\text{Min}[(1), (2)] \times 0.3\%$

- (1) 투자누계액  $\times 5\% + \text{Min}[(1) \text{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만원}, (2) \text{ 투자누계액} \times 2\%]$   
(2) 한도액 :  $\text{Min}[(1) \text{ 상시근로자수} \times 200\text{만원}, (2) \text{ 투자누계액} \times 10\%]$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감면한도"라 함)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투자누계액<sup>91)</sup>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의 상시근로자수  $\times 1\text{백만원}$
  - 나. 「1.」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2\text{백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91) 여기서 "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1 제4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지특령 §108 ③, 조특령 §116의 21 ④ 참조).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투자누계액의 5%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1) 상시근로자수×100만원, (2) 투자누계액×2%]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기 「2.」 또는 「3.」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아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감면추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감면추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같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감면신청 등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6 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법 § 159)

### (1) 적용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12.31.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함)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감면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는 경우

### (2) 감면범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동일

### (3) 감면주장

상기 「2.」 또는 「3.」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아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누계액」은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하고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에는 첫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6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감면신청 등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7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160)

### (1) 적용대상

금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항 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익금 및 손금"이라 함)에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또는 제106조의 9에 따라 금거래 계좌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감면범위

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액 :  $\text{Min}[(1), (2), (3)]$

- (1) 종합소득분 산출세액  $\times$  [(당해연도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 – 직전 과세연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  $\times$  50% / 총익금 및 손금 합계액]
- (2) 종합소득분 산출세액  $\times$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  $\times$  5% / 총익금 및 손금 합계액]
- (3) 한도액 : 해당연도 종합소득분 산출세액 – 직전연도 종합소득분 산출세액

위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 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 (3) 감면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 4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3.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법 § 161)

### (1) 적용대상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함)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함)을 발급하는 경우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2) 감면범위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원을 곱한 금액(“공제세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3) 신용정보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제공을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 · 기재내용 · 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 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 · 기재내용 · 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 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밖에 세제지원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을 준용한다.

## 1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법 § 162)

### (1) 적용대상

① 금지금<sup>92)</sup>을 공급하는 사업자<sup>93)</sup>(“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함)가 보관기관<sup>94)</sup>에 임차된 금지금을 금

92)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7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지특령 §114 ①, 조특령 §121의 7 ①).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을 말한다.

93)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7 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지특령 §114 ②, 조특령 §121의 7 ②).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함)를 말한다.

94)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7 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지특령 §114 ③, 조특령 §121의

현물시장<sup>95)</sup>(“금 현물시장”이라 함)을 통하여 2015.12.31.까지 공급하는 경우

- ②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함)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12.31.까지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7 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2) 세액공제 범위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함. 다만,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다음의 「②」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 : ① 또는 ② 선택

- ① 종합소득분 산출세액 × (이용금액 초과분/매출액) × 10%  
② 종합소득분 산출세액 × (이용금액의 5%/매출액) × 1%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7을 준용한다.

### 사례

#### 금지금 매각 여부 판단(조심 2013서3037, 2014.1.15.)

쟁점금지금(약 45kg = 0.00375kg × 12,000돈)을 보관하다가 2008년~2009년 금은방 10여 군데에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한 사실에 근거하여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8년~2009년에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매수를 위한 대금 확보 목적으로 쟁점금지금을 현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 금지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를 일시에 매각하기는 어려워 분할하여 여러 차례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 금지금을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7 ③).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5)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7 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지특령 §114 ④, 조특령 §121의 7 ④).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차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금 현물시장”이라 함)을 말한다.

## 15.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법 § 163)

### (1) 적용대상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

### (2) 감면범위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3에 따른 세율로 한다.

## 16. 정치자금의 세액공제(법 § 164)

### (1) 적용대상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2) 감면범위

정치자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사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구분(조심 2013서4880, 2014.1.28.)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국가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재재로서 이미 확정된 수수자의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점, 쟁점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 용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법 § 165)

### (1) 적용대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자결제망<sup>[96]</sup>을 이용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 12. 31. 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 (2) 감면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를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3) 신청 등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22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8.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 166)

## (1)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

## (2) 감면범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 (3) 신청 등

신청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6 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

96) 여기서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22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지특령 §115 ①, 조특령 §104의 22 ① 참조).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법 § 167)

### (1)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이 경우 이들 조합에 대하여 202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함]에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의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의 손금불산입액 등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당기순이익과 세"라 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2) 특례적용범위

202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9%의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0.9%)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 XII.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 1.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 감면(법 § 167의 2)

### (1) 적용대상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 · 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 8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2) 감면범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내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 · 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 · 감면한다.

### (3) 추징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 2.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 167의 3)

### (1) 적용대상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 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2) 적용대상확대

지방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 3.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법 § 167의 4)

### (1)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국세"라 함)의 체납액 징수특례("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제2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함.

## (2) 절차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의 규정을 준용하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4. 중복지원의 배제(법 § 168)

### (1) 국가 등 출연금 등과 세액공제간 중복감면 배제

내국인이 지방세특례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대상 투자세액공제 범위]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국가 등"이라 함)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출연금 등 중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금융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 회사 등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sup>97)</sup>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sup>98)</sup>

97) 여기서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지특령 §117 ①, 조특령 §123 ① 참조).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98)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지특령 §117①, 조특령 §123 ② 참조).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을 말한다.

## (2)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위 「(1)」의 [대상 투자세액공제범위]가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투자비율분 공제배제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위의 「(1)」 대상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 감면규정간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 · 제2항,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50

이자지원금=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5) 동일사업장에 세액 감면규정간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5조 제1항·제2항,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 (6) 양도소득세 중복적용 배제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7) 거주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5.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법 § 169)

#### (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하는 경우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 동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2) 무신고시 결정과 기한 후 신고시 결정하는 경우 감면 및 세액공제 배제

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 · 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 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 공제 ·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과소신고 등의 경정하는 경우 감면 배제

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sup>99)</sup>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 · 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 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의 감면 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 · 제2항, 제149조,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9조의 세액공제 ·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 ·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sup>100)</sup>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99)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지특령 §118 ①, 조특령 §122 ① 참조).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0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지특령 §118 ②, 조특령 §122 ②).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 · 법인세법 제117조 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 2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6.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등(법 § 170)

### (1) 실거래와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배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 (2) 미등기자산 양도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법 § 171)

### (1)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사업용 고정자산 증설투자 감면배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함)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디지털방송장비<sup>101)</sup> 및 정보통신장비<sup>102)</sup>은 제외)으로서 증설투자<sup>103)</sup>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9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103조 제2항 제3호, 제10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sup>104)</sup>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1990년 이후 중소기업 외의 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배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

101)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19 ①, 조특령 §124 ③ 참조).

③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 편집 ·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준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뿐만 해당)를 말한다.

102) "정보통신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4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19 ②, 조특령 §124 ④ 참조).

④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 전송설비 ·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103) "증설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19 ③, 조특령 §124 ① 참조).

104)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19 ④, 조특령 §124 ② 참조).

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103조 제2항 제3호, 제10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법 § 172)

### (1) 의의

최저한세 제도(minimum tax)는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각종 감면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면전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최저한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감면배제대상은 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면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

### (2) 최저한세 계산

#### 가) 적용대상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함)  
여기서 「추징세액」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에 의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또한 세액공제 등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중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 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① 제99조,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제103조, 제104조 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 ②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나) 계산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 : Max[(1), (2)]

(1) 감면 전 산출세액×45%(산출세액 300만원 이하 35%)

(2) 각종 감면 후 세액

다음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 다) 적용방법

① 제99조,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제103조, 제104조 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②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위 「①+②」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위 「①+②」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최저한세로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다음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위 「①」의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2. 위 「②」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 계산방식 ■

구 분	적용대상 감면공제	〈1단계〉 감면 후 세액	〈2단계〉 감면전과표×최저세율
당기순이익 + 익금-손금	(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 금 등		
사업연도소득금액			

구 분	적용대상 감면공제	〈1단계〉 감면 후 세액	〈2단계〉 감면전과표×최저세율
-소득공제, 감면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0.6%~3.8%)	과세표준+(1)금액 ×최저한세율(35%, 45%)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2)투자세액공제 등	산출세액	
세 액 (-)최저한세 제외대상	(3)연구 및 인력개발비공 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저한세액 (* 산출세액이 300만원 초과분 45% 적용)
차가감납부세액			

###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사업자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 산출방법

당기순이익 50,000,000원 익금 15,000,000원 손금 30,000,000원

소득공제 10,000,000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12,000,000원(손금에 기 포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44,000원,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100,000원인 경우

(1) 감면 후 지방소득세 세액

$$(50,000,000 + 15,000,000 - 30,000,000 - 10,000,000) \times 기본세율(1.5\%) = 267,000\text{원}$$

$$267,000 - 144,000 = 123,000\text{원}$$

(2) 최저한 세액

$$\textcircled{1} (50,000,000 + 15,000,000 - 30,000,000 - 10,000,000) + 12,000,000 = 36,000,000\text{원}$$

$$\textcircled{2} 36,000,000 \times \text{기본세율}(1.5\%) = 432,000\text{원}$$

$$\textcircled{3} 432,000 \times 35\% = 151,200\text{원}$$

$$\textcircled{4} \text{미달세액(추징세액)} : 151,200 - 123,000 = 28,200\text{원}$$

(4) 적용배제할 감면분

$$28,200 \div 1.5\% = 1,880,000\text{원}(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서 배제할 금액에 해당됨)$$

## 9.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법 § 173)

종합한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종합한도 적용대상 과세특례(7개)

- ①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②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③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④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⑤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⑥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⑦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개인이 종합한도 적용대상 과세특례(7개)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2) 과세기간별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 : Max[①, ②]

- ① 종합한도 적용대상 과세특례 중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5% · 20% 감면적용분), 제133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상당액
- ②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 (3)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③]

- ① 적용대상 제131조의 경우 :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합계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 ② 적용대상 제131조 및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 ③ 적용대상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2조까지의 경우 :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합계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10.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법 § 174)

#### (1)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가) 적용대상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이월공제 방법 : 5년(7년) 이내 이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99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제102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까지)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 다) 이월공제 방법의 특례

이법 제113조의 2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174조 제3항 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 (2) 이월공제순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1)」의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의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3)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이월공제 특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1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수<sup>105)</sup>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50만원)

105) 여기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의 2 제1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21 ①, 조특령 §136의 2 ① 참조).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sup>106)</sup>, 장애인근로자<sup>107)</sup>, 60세 이상인 근로자수<sup>108)</sup>×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50만원)
  -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다.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 감면세액의 추징(법 § 175)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1)×(2)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72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2) 1일 1만분의 3의 율

106) 청년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지특령 §121 ②, 조특령 §136의 2 ② 참조).

107) 여기서 장애인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의 2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수로 한다(지특령 §121 ③, 조특령 §136의 2 ③ 참조).

108) 여기서 60세 이상인 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의 2 제4항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수로 한다.

## 1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법 § 176)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1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시의 적용방법 등(법 § 176의 2)

### (1)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한도액

Max[(1), (2)]

- (1) 자녀세액공제액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
- (2)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분리과세대상 이자, 배당소득 제외)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한도액 : Max[(1), (2)]

- (1) 보험료세액공제액 + 의료비세액공제액 +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액
- (2) 근로소득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제97조의 4 제1항(보험료세액공제), 제2항(의료비세액공제), 제3항(교육비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감면액 및 세액공제의 총액의 한도액 : Max[(1), (2)]

- (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 합계액
- (2)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6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